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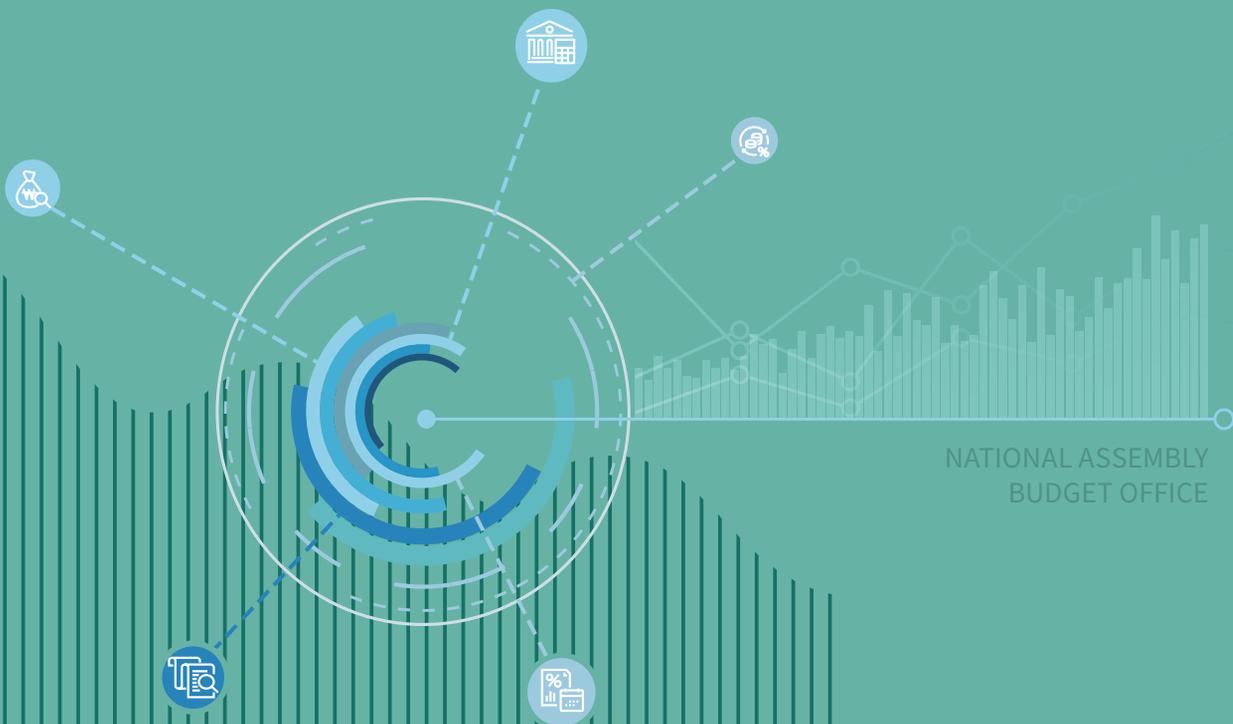
2023.10.

국회예산정책처 I 예산안 분석

#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 Analysis of Major Programs in the Budget Proposals

### (2) 국고보조사업 분석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 (2) 국고보조사업 분석

## 예산안분석시리즈 VI (2)

### 국고보조사업 분석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김신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작성** | 안태훈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지원** | 김선정 사회행정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심록희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02) 6788-3773 | sae@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VI (2)

# 국고보조사업 분석

2023. 10.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10. 24.)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간사

정부는 지난 9월 1일 총수입 612.1조원, 총지출 656.9조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2023년에 이어 건전 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재정수지·채무 악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R&D·보조사업 정비 등 재정사업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올해 약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2023년 예산 대비 33.1조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함께 전략적 자원배분, 재정건전성, 중장기적 재정현안 등을 점검하여야 할 국회의 역할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2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 1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권,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3권 등 기존 5개 분석에 「재정총량 분석」 2권,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6권을 추가하여 총 27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과 함께 인건비, 세수결손에 따른 예산안 편성·집행,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등 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한편, R&D 예산안, 재난안전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강화 사업 등 주요 정책 주제를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주요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성인지 예산서 분석」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총괄·사업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재난정책보험 사업,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등 주요 사업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발간되는 「재정총량 분석」에서는 경제·재정 전망, 조세지출과 재정 지출 연계, 재정건전성 분석 등 거시적 재정총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고용, 교육 등 12대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한 분석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에서는 인구위기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첨단기술 육성 전략, 인재양성 등 재정 측면에서의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 요 약 / 1

### I. 개요 / 1

-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1
- 2. 분석 대상 및 방법 ..... 3

### II. 사업 추진 및 예·결산 현황 / 4

- 1. 국고보조금 개요 ..... 4
  - 가. 보조금 개요 및 유형 ..... 4
  - 나. 보조금 관련 법령 ..... 7
  - 다. 보조금 관련 전산시스템 ..... 8
    -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8
    -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 11
- 2. 국고보조사업 예·결산 현황 ..... 13

### III. 주요 쟁점 분석 / 18

- 1.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분석 ..... 18
  - 가. 현황 ..... 18
  - 나. 분석의견 ..... 19



# CONTENTS

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예산안 연계 분석 .....	23
가. 현황 .....	23
(1)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	23
(2) 평가기준 .....	24
(3)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26
나. 분석의견 .....	28
(1)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연계 분석 .....	28
(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개선방향 .....	45
3. 신규 보조사업 심사의 적정성 분석 .....	49
가. 현황 .....	49
나. 분석의견: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내실화 필요 .....	51
4. 부정수급 관리 현황 분석 .....	56
가. 현황 .....	56
(1) 부정수급 개념 및 유형 .....	56
(2) 부정수급 관리체계 .....	60
(3)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	61
나. 분석의견 .....	63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유형별로 관리할 필요 .....	63
(2) 부정수급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체계 강화 필요 .....	65

##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70

# 요 약

## 1. 개요

###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보조금은 정부가 국내의 자원배분결정, 소득분배, 지출생산성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서비스 공급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중요한 정책수단 또는 정책도구임
- 최근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COVID-19 등의 영향으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023년 예산액 기준 102.3조원, 정부 총지출 대비 16.0%를 차지
-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를 강화
- 본 보고서는 국고보조금 관련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이 관련 법령 및 정부방침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

### 2. 분석 대상 및 방법

- 본 보고서는 정부 프로그램 예산체계 상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함

- 분석은 ①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편성 적정성, ②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사업의 예산안 반영 적정성, ③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효과성, ④ 부정수급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의 기준을 사용하여 진행

## II. 사업 추진 및 예·결산 현황

### 1. 국고보조금 개요

#### 가. 보조금 개요 및 유형

- 보조금에 관한 기본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보조금에 대해 정의
  -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
- 국고보조금은 주관적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보조사업으로 분류한 사업의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간주
  - 기획재정부는 세출예산의 지출세목이 민간경상보조(320-01목), 민간자본보조(320-07목),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 해외경상이전(340-01목), 해외자본이전(340-03목)인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분류

## 나. 보조금 관련 법령

- 보조금의 법령체계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으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중앙부처)과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가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개별적 법적근거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법적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함

## 다. 보조금 관련 전산시스템

###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의 전(全) 처리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편의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 중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부정수급된 보조금이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의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조금을 신청·집행·사후 단계별로 검증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

###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 NPAS시스템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추진되었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신청/접수/선정/교부/집행/평가/정산 등의 과정을 전산시스템 방식으로 구축, 운영하여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있는 체계적인 온라인 관리정보 시스템을 제공

## 2. 국고보조사업 예·결산 현황

-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2023년 대비 5.1조원(5.00%) 증가한 107.5조원
  - 자치단체보조는 88.4조원으로 2023년 대비 6.34% 증가하였으며, 민간보조는 19.0조원으로 2023년 대비 0.79% 감소

[국고보조금 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안	증 감	증감률
320 민간이전	191,984	190,470	△1,514	△0.79
1 민간경상보조	156,601	156,312	△289	△0.18
7 민간자본보조	35,384	34,158	△1,226	△3.46
330 자치단체이전	831,322	884,038	52,716	6.34
1 자치단체경상보조	655,719	703,181	47,462	7.24
3 자치단체자본보조	175,603	180,857	5,254	2.99
합 계	1,023,306	1,074,508	51,202	5.00

자료: 기획재정부

- 2024년도 보조금 예산안 증가 주요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사업 ‘기초연금 지급’ 및 ‘생계급여’임

[2024년도 예산안 증가 주요 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보조금)	2022년 결산	예산		증감	
		2023년(A)	2024년안(B)	(B-A)	(B-A)/A
기초연금 지급	16,275,264	18,530,432	20,201,456	1,671,024	9.0
기초연금 급여	16,253,539	18,507,787	20,178,925	1,671,138	9.0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1,526,924	25.4
생계급여	5,383,780	6,012,456	7,539,428	1,526,972	25.4

자료: 기획재정부

### III. 주요 쟁점 분석

#### 1.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분석

##### 가. 현황

- 202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은 107.5조원으로, 2023년 예산 102.3조 원 대비 5.1조원(5.0%) 증액되었으며, 정부 총지출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은 16.4%로 2023년 16.0% 대비 0.4%p 상승

[국고보조금과 정부총지출(예산기준) 추이(2016~2024)]

(단위: 조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안
국고보조금(A)	60.3	59.6	66.9	77.9	86.7	97.9	102.3	102.3	107.5
전년대비 증감률	3.4	-1.2	12.2	16.4	11.3	12.9	4.5	0.0	5.0
정부 총지출(B)	386.4	400.5	428.8	469.6	512.2	558.7	607.7	638.7	656.9
전년대비 증감률	2.9	3.6	7.1	9.5	9.1	8.9	8.9	5.1	2.8
A/B	15.6	14.9	15.6	16.6	16.9	17.5	16.8	16.0	16.4

자료: 기획재정부

## 나. 분석의견

- 202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규모 및 정부 총지출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이 증가하였고, 일부 보조사업 예산안 편성내역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보조사업 정비 등 재정사업 정상화가 적정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
- 202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규모는 2023년 대비 5.0% 증가(102.3조원 → 107.5조원)하였으며, 정부 총지출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승(16.0% → 16.4%)
  -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과 관련되는 민간경상보조예산은 0.2%(289억원), 민간자본보조예산은 3.5%(1,225억원) 감액에 불과
  - 일부 민간경상보조예산안 감액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등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의 비목전환에 의한 것이며, 다음 [표]와 같이 2024년도 예산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는 377억원(0.5%) 증액

[보조사업비 및 민간위탁사업비의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3 예산(A)	2024예산안(B)	(B-A)	(B-A)/A
보조 계	1,023,306	1,074,507	51,202	5.0
자치단체 보조	831,321	884,038	52,716	6.3
- 자치단체 경상보조	655,719	703,181	47,463	7.2
- 자치단체 자본보조	175,603	180,857	5,254	3.0
민간보조사업비	191,984	190,470	△1,515	△0.8
- 민간경상보조	156,601	156,311	△289	△0.2
- 민간자본보조	35,384	34,158	△1,225	△3.5
<b>민간위탁사업비</b>	80,112	80,489	377	0.5

자료: 기획재정부

- 202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의 측면에서 예산안 편성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예산안 연계 분석

### 가. 현 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의무지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도입
-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2020년 보조사업 평가를 받은 사업 및 존속기한 3년 도래 사업을 대상으로 27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음
  - 평가 결과, 정상추진 6개 사업(2.2%), 즉시 폐지 11개 사업(4.0%), 단계적 폐지 22개 사업(7.9%), 통폐합 2개 사업(0.7%), 감축 141개 사업(50.7%), 사업방식 변경 96개 사업(34.5%)으로 나타남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단위: 개, %)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합계
2023년	사업수	11	22	2	141	96	6	278
	비율	4.0	7.9	0.7	50.7	34.5	2.2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국고보조금은 판정유형별로 향후 3년 동안, ‘즉시 폐지’ 약 1,312억원, ‘단계적폐지’ 약 1,801억원 등 총 3,113억원 감축이 필요하며, ‘감축’ 판정을 받은 141개 세부사업(2023년 예산 3조 8,326억원)은 평가결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3년 예산 대비 목표 감축범위를 적용하여 필요한 감축규모를 산정

[최종 판정결과별 국고보조금 감축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즉시폐지 (비목전환)	단계적폐지 (비목전환)	통폐합	감축	
					높은 수준	일정 수준
2023	예산	1,312 (1,185)	1,801 (165)	92	10,347	27,979
	감축규모	1,312 (1,185)	1,801 (165)	-	최소 1,035	최대 2,798

자료: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3.

## 나. 분석의견

### (1)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연계 분석

#### (가) 즉시 폐지 판정 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즉시 폐지’ 판정을 받은 11개 세부사업 중 2024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은 1개임
  - 환경부 소관 세부사업 ‘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즉시 폐지’ 판정을 받았으나,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장평가 결과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계속 추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
  - 또한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21조에 따라, 사정변경 등으로 평가결과 반영이 어려운 사업은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즉시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

**(나) 단계적 폐지 판정 사업**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 중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사업은 ‘한국한의약진흥원운영지원’,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구축’, ‘문화유산방문자센터건립’ 등 3개 사업임
- 3개 사업의 ‘단계적 폐지’ 판정 사유는 각각 2025년 말 출연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적 폐지(한국한의약진흥원운영지원), 일부 내역사업의 분리(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구축), 자동종료(문화유산방문자센터건립)이므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임

**(다) 감축 판정 사업**

-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축’ 판정을 받은 세부사업 중 2024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사업은 22개임
- ‘감축’ 판정을 받은 세부사업의 일부 내역(내내역)사업 예산안은 감축되었으므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임

## (라) 정상추진: 보조사업 통합 적정성 검토 필요

-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사업 ‘제대혈공공관리’를 세부사업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사업’과 통합
-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대상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혈공공관리사업과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사업의 보조대상 기관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을 제외하고 상이함
  - 제대혈공공관리사업의 보조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 동아대병원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기증제대혈은행부임
  -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사업의 보조대상 기관은 대한적십자사,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사)생명나눔실천본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기증희망자은행부임
- 민간보조사업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목적 및 보조대상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보조대상 기관별로 세부사업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개선방향

### (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을 내역사업으로 설정할 필요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세부사업 단위로 수행되고 있으나, 평가대상 보조사업의 대부분은 세부사업 하위의 내역(내내역)사업임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단위(세부사업)와 실제 평가대상 사업단위(내역 또는 내내역 사업)가 상이할 수 있음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세부사업 내 일부 내역(내내역)사업이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등의 판정 받을 경우, 판정 결과는 해당 내역(내내역)사업에 적용됨
  - 반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감축’으로 판정될 경우, ‘감축’ 예산규모는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기준으로 함
  - 내역사업별로 사업착수 시점이 다르므로, 타 내역사업의 평가년도에 시작하는 신규 내역사업은 착수년도에 연장평가를 받게 될 수 있음
- 보조사업은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 여러 개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유사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대상을 세부사업 혹은 내역사업으로 설정
  -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도 내역사업을 공통 집행관리 단위로 설정하여 집행상황을 관리

#### (나) 보조사업에 대한 중복평가 지양 필요

- 정부는 ① 성과목표관리와 ② 사업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성과목표관리는 프로그램 단위로 시행하고, 사업성과평가는 세부사업 단위로 시행
-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포함한 11개의 사업성과평가제도를 운영 중
- 정부는 사업성과평가에 대해 세부사업 단위로 1사업 1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단위를 세부사업으로 유지할 경우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중복평가를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3. 신규 보조사업 심사의 적정성 분석

#### 가. 현황

- 기획재정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동 법과 동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마련
  -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9조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는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성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

#### 나. 분석의견: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내실화 필요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3년마다 시행되며, 2023년 연장평가 대상사업은 2020년에 연장평가를 받은 사업 및 2023년에 신규로 연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구성
  -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에 신규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은 2020년에도 연장평가를 받은 기존 보조사업 대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판정 비율이 높음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단위: 개, %)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합계
전체	사업수(a)	11	22	2	141	96	6	278
	비율	4.0	7.9	0.7	50.7	34.5	2.2	100.0
기존	사업수(b)	3	5	0	105	67	5	185
	비율	1.6	2.7	0.0	56.8	36.2	2.7	100.0
신규	사업수(c)	8	17	2	36	29	1	93
	비율	8.6	18.3	2.2	38.7	31.2	1.1	100.0
b/a		27.3	22.7	0.0	74.5	69.8	83.3	66.5
c/a		72.7	77.3	100.0	25.5	30.2	16.7	33.5

자료: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3.를 바탕으로 제작됨

-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받았던 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폐지’ 등의 부정적 판정을 받은 것은 적격성 심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에 기인할 수는 있으나, 사업방식 및 중복성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신규 보조사업 도입시 적격성 심사를 내실있게 할 필요

#### 4. 부정수급 관리 현황 분석

##### 가. 현 황

-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부정수급’을 정의
  -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함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에 해당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부정 청구 등’은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통계 자료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부정수급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며, 2022년 부정수급 환수 현황은 46,856건, 245.0억원임
  - 다음 [표]의 ‘환수’는 주무관청 등에서 적발하여 환수한 전체 부정수급 통계치이며, 행정착오, 행정시차, 사정변경 등의 지급오류(광의의 부정수급)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임
  - ‘의심’ 및 ‘적발’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부정수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 또는 적발 사업의 건수 및 금액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현황(사업년도 기준, '23.9월 추출)]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환수	건수	132,758	103,428	65,477	66,966	46,856
	금액	594.7	209.4	286.6	345.6	245.0
의심 (e나라도움)	건수	4,291	7,175	3,853	4,243	4,603
	금액	2,319	2,734	2,662	1,757	2,379
적발 (e나라도움)	건수	18	154	132	231	260
	금액	1.7	25.0	31.5	34.8	98.1

자료: 기획재정부

## 나. 분석의견

###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유형별로 관리할 필요

-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내역사업 단위로 관리하고 있고, 하나의 내역사업 내에는 여러 보조사업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사업별로 적발되는 부정수급의 유형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음
- 보조금 부정수급의 유형별 현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유형별 자료를 조사
  - 국가권익위원회(2023)는 2022년 하반기 보조금 등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유형별 환수 등 처분 현황을 발표하였는데, 부정수급 환수액의 73.6%가 오지급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관리·분석하여 체계적인 부정수급 감소대책을 마련할 필요
  -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착오, 행정시차, 사정변경 등의 유형별로 부정수급 감소 목표치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2) 부정수급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체계 강화 필요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된 기관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 수사기관 외 신고시, 행정청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판단될 때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
  - 수사기관인 경찰청은 신고·고소·고발 또는 자수에 의해 수사를 개시하며, 현행 범체포, 풍문, 첩보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자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
- 경찰청은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 중으로, 8월 27일 현재까지 총 156건을 검거(송치)

- 경찰은 현재 384건을 내·수사 중이며, 이 중 최근 정부부처 수사의뢰 건수는 35건, 경찰청 자체 적발건수는 349건임
- 부정수급 관리·단속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부처 및 경찰청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기망·부패 유형의 부정수급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과 공유하여 수사 및 환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

####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보고서에서 ①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편성 적정성, ②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사업의 예산안 반영 적정성, ③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효과성, ④ 부정수급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규모 및 정부 총지출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 증가, 일부 보조사업 예산안 편성내역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의 측면을 감안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 시 국고보조금 예산 구조조정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규모는 2023년 대비 5.0% 증가(102.3조원→107.5조원)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여 정부 총지출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승(16.0%→16.4%) 하였음
  - 202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일부 보조사업에서 기존 보조사업 예산안 편성내역의 적정성 검토, 신규 보조사업 예산안 편성 재고 등이 필요한 사례들이 발견되었음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사업의 예산안 반영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장평가 결과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즉시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
  - 민간보조사업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목적 및 보조대상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보조대상 기관별로 세부사업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보조사업은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 여러 개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정부는 사업성과평가에 대해 세부사업 단위로 1사업 1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단위를 세부사업으로 유지할 경우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중복평가를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신규 보조사업 심사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신규로 연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중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받았던 사업에서 전체 연장평가 대상사업 대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판정 비율이 높으므로, 신규 보조사업 도입시 적격성 심사를 내실있게 할 필요
  -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신규로 평가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보조사업 중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받았던 19개 사업의 판정결과를 살펴보면, 19개 사업 모두 폐지, 감축, 통폐합 등의 판정을 받았음
  
- 부정수급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부정수급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

-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관리·분석하여 체계적인 부정수급 감소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착오, 행정시차, 사정변경 등의 유형별로 부정수급 감소 목표치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부정수급 관리·단속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부처 및 경찰청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기망·부패 유형의 부정수급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과 공유하여 수사 및 환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

## 1

## 분석의 배경 및 목적

보조금은 정부가 국내의 자원배분결정, 소득분배, 지출생산성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서비스 공급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중요한 정책수단 또는 정책도구이다. 보조금의 교부 대상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될 수 있는데, 민간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주로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서비스 공급을 가능하게 하거나,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COVID-19 등의 영향으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023년 예산액 기준 102.3조원, 정부 총지출대비 16.0%를 차지하고 있다. 지급대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민간보조는 전체 국고보조금의 18.8%(19.2조원), 자치단체보조는 81.2%(83.1조원)를 차지한다. 분야별 보조금 수준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의 50%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의 경제 상황 및 복지서비스 수요증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2월에 7년(2016~2022)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총 31조 4천억원 규모이므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sup>1)</sup> 2023년 3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엄정관리 방침을 제시하였다.<sup>2)</sup> 구체적으로 정부는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

1) 대한민국 대통령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추진 - 2022년 보조금 총액 5조 4천5백억, 향후 관리 대폭 강화」, 보도자료, 2022년 12월 28일(수).

2)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3.3.

가 등 주요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환류하고,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부처 담당공무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사례 적발시 사업 폐지·축소·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6월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2024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2023년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sup>3)</sup>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2023.6.)에서도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sup>4)</sup>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국고보조금 관련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정부는 세부사업 단위로 재정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는 대부분의 보조사업들은 내역(내내역)사업 단위로 예산이 편성·추진되고 있어 사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이 관련 법령 및 정부방침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3) 대한민국 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각종 부정 비리 온상 확인」, 보도자료, 2023 6 2.

4) 기획재정부,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국가 본질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 투자 강화 -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보도자료, 2023.6.28.

본 보고서는 정부 프로그램 예산체계 상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국고보조금은 지원대상에 따라 민간단체에 교부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는 전체 국고보조금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분석은 ①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편성 적정성, ②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사업의 예산안 반영 적정성, ③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효과성, ④ 부정수급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의 기준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고보조금 현황을 개괄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현황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분석 대상 및 기준]

분석 대상	분석기준	주요 분석내용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예산안 편성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고보조금 예산안 규모 및 정부 총지출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li> <li>정부의 국고보조금 예산안 편성 방향과 부합 여부</li> </ul>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	예산안 반영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장평가 판정 유형별 예산안 반영 여부 분석</li> <li>연장평가 방법론의 적정성 검토</li> </ul>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대상 사업	적격성 심사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보조사업 선정 평가항목과 연장평가 평가항목 비교</li> <li>적격성 심사 통과 사업에 대한 연장평가 판정 결과 비교</li> </ul>
부정수급 적발 사업	부정수급 관리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수급 대응 관련 부처별 업무 내용 비교</li> <li>부정수급 관련 부처별 협업체계 개선방안 검토</li> </ul>

이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관련 소관부처 및 국고보조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 1

## 국고보조금 개요

## 가. 보조금 개요 및 유형

보조금에 관한 기본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sup>5)</sup>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sup>6)</sup>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조금의 교부 주체는 국가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어야 하고, 교부 대상 사무·사업은 국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 국제조약에 따른 것을 제외한 부담금,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급부금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이 포함된다.

##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보조금을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경상보조금과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 취득 등을 위한 자본적 경비를 지원하는 자본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표]와 같이 세출예산의 지출세목이 민간경상보조(320-01목), 민간자본보조(320-07목),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 해외경상이전(340-01목), 해외자본이전(340-03목)인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주관적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므로, 7) 본 보고서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보조사업으로 분류한 사업의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간주한다.

---

7) 사업성격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를 기관 등에 대행시키는 보조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사업비이지만, 일부 민간위탁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102쪽)은 사업성격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를 기관 등에 대행시키는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금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전환하여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도 일부 보조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출연은 국가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금전적 급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조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는 일부 보조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조사업의 지출세목]

구 분		내 용
민간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 (320-01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한다.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
	민간자본 보조 (320-07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자치단체 이전 (330)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보조금
해외이전 (340)	해외경상 이전 (340-01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해외자본 이전 (340-03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 1.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2. 해외 출자금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2023. 388~390쪽.

## 나. 보조금 관련 법령

보조금의 법령체계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으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중앙부처)과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등 5가지 지침으로 구성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개별적 법적근거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예산편성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2023)<sup>8)</sup>에서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등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관련 법적 근거를 예시로 살펴보면, 국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sup>9)</sup>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sup>10)</sup>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8)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2023, 100쪽.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不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다. 보조금 관련 전산시스템

###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 보조금의 중복지급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편의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하고 있다.<sup>11)</sup>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sup>12)</sup>에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 관련 자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6조의4<sup>13)</sup>에서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9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 바. 생략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부정수급된 보조금이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의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조금을 신청·집행·사후 단계별로 검증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14)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sup>15)</sup>에서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황을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모든 공모 현황이 제공되므로, 사업분야별, 공모기관별, 지역별 조희가 가능하고,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은 기획재정부 소관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에 편성되고 있다. 2023년 예산은 208.3억원이며, 2024년도 예산안은 179.6억원으로 편성되었다.

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4.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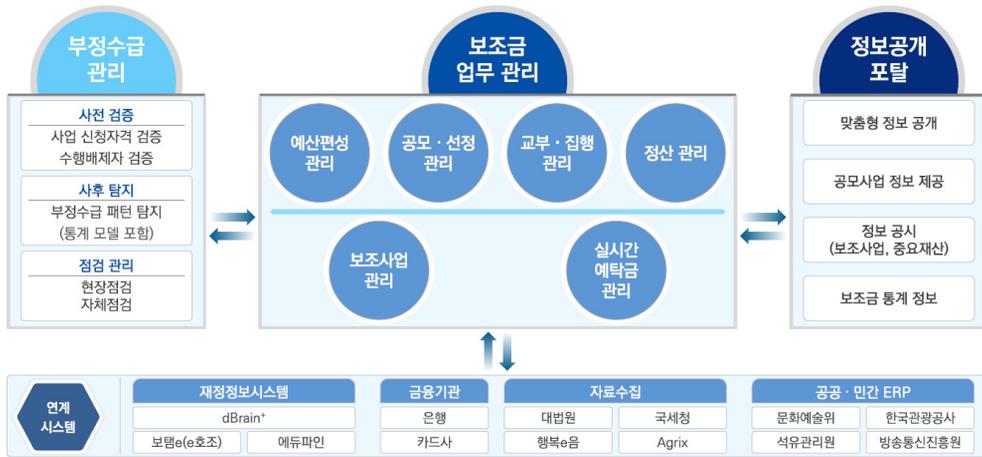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관련 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22	2023	2024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18,425	20,832	17,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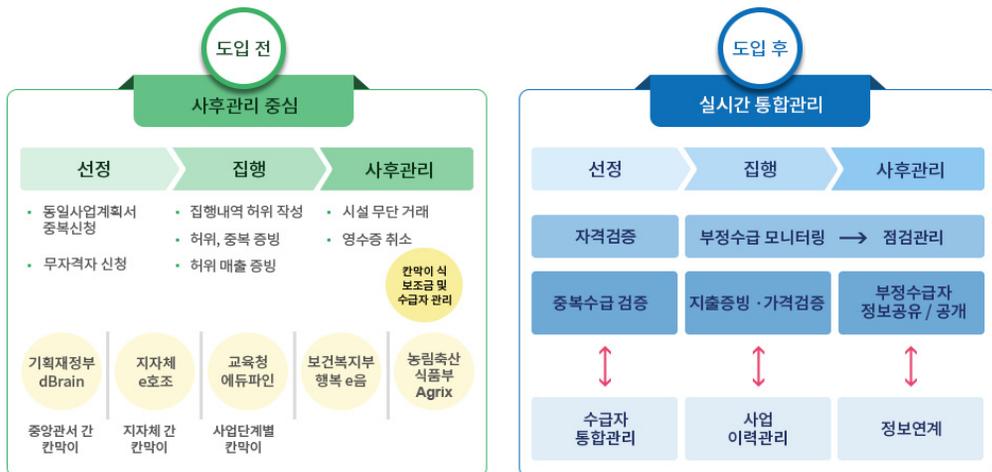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성 현황]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부정수급 방지프로세스) 도입 전후 비교]



자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gosims.go.kr>>

##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sup>16)</sup>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시스템; Nonprofit Organization Public Activity Support System)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NPAS시스템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추진되었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신청·접수·선정·교부·집행·평가·정산 등의 과정을 전산시스템 방식으로 구축·운영하여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있는 체계적인 온라인 관리정보 시스템을 제공한다.

[NPAS 시스템 구성도]



자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npas.mois.go.kr/nsbms/hmp/comn/cntsMng/14/846/none/cntsMngR.do>>

NPAS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은 행정안전부 소관 세부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의 내역사업 ‘공익사업 관리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에 편성되어 있다.

### 1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23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은 각각 4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NPAS시스템 관련 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		7,242	7,463	3,929
	공익사업 관리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402	402	402
	공익사업 관리 시스템 고도화	0	200	0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중앙부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1,553개이며, 지방자치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13,557개이다. 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의 건수와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건수와 금액]

(단위: 건, 억원)

구 분	건 수		금 액	
	신 청	선 정	신 청	선 정
2014	460	293	315	133
2015	490	223	396	90
2016	472	225	358	90
2017	418	200	270	64
2018	364	218	209	70
2019	354	235	177	74
2020	327	238	159	77
2021	290	209	148	71
2022	301	194	162	70
2023	274	197	121	73

자료: 행정안전부

## 2

## 국고보조사업 예·결산 현황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2023년 대비 5.1조원(5.00%) 증가한 107.5조원이다. 자치단체보조는 88.4조원으로 2023년 대비 6.34% 증가하였으며, 민간보조는 19.0조원으로 2023년 대비 0.79% 감소하였다.

[국고보조금 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안	증감	증감률
320 민간이전	191,984	190,470	△1,514	△0.79
1 민간경상보조	156,601	156,312	△289	△0.18
7 민간자본보조	35,384	34,158	△1,226	△3.46
330 자치단체이전	831,322	884,038	52,716	6.34
1 자치단체경상보조	655,719	703,181	47,462	7.24
3 자치단체자본보조	175,603	180,857	5,254	2.99
합 계	1,023,306	1,074,508	51,202	5.00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국고보조금 증가 주요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사업 '기초연금 지급' 및 '생계급여'이다. '기초연금 지급'의 내역사업 '기초연금 지급' 예산안은 2023년 대비 1.67조원(9.0%) 증액되었으며, '생계급여'의 내역사업 '생계급여' 예산안은 2023년 대비 1.53조원(25.4%) 증가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 증가 주요 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보조금)	2022년 결산	예산		증감 (B-A)	(B-A)/A
		2023년(A)	2024년안(B)		
기초연금 지급	16,275,264	18,530,432	20,201,456	1,671,024	9.0
기초연금 급여	16,253,539	18,507,787	20,178,925	1,671,138	9.0
생계급여	5,386,007	6,014,148	7,541,072	1,526,924	25.4
생계급여	5,383,780	6,012,456	7,539,428	1,526,972	25.4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을 제외하고 보조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예산은 전년대비 동결 수준이었으나, 2024년도 예산안은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하였다. 국고보조금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17%대 수준이다.

[국고보조금 규모와 정부총지출(예산기준) 추이(2019~2024)]

(단위: 조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안
◦ 보조금 규모	77.9	86.7	97.9	102.3	102.3	107.5
· 자치단체보조	58.8	65.6	74.8	79.4	83.1	88.4
· 민간보조	19.1	21.1	23.1	22.9	19.2	19.0
◦ 정부 총지출	469.6	512.2	558.0	607.7	638.7	656.9
◦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중	16.6	16.9	17.5	16.8	16.0	16.4



자료: 1.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3. 13쪽.  
2.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의 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0~22년간 COVID-19 등의 영향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연도별로 본예산 대비 결산액이 30.7~42.5%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이전 보조금 결산액은 본예산 대비 41.2~174.7% 규모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자치단체이전 보조금 결산액은 감소하였다.

[국고보조사업 예·결산]

(단위: 조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민간이전	예산(A)	19.1	21.1	23.1	22.9	19.2	19.0
	추경(B)	19.7	29.8	36.0	61.0	-	-
	결산(C)	18.8	29.8	42.3	62.9	-	-
	C/A	98.4	141.2	183.1	274.7	-	-
자치단체 이전	예산(A)	58.8	65.6	74.8	79.4	83.1	88.4
	추경(B)	60.5	85.2	86.4	84.2	-	-
	결산(C)	61.7	86.7	85.7	83.0	-	-
	C/A	104.9	132.2	114.6	104.5	-	-
합 계	예산(A)	77.9	86.7	97.9	102.3	102.3	107.5
	추경(B)	80.3	115.0	122.4	145.1	-	-
	결산(C)	80.4	116.5	128.0	145.8	-	-
	C/A	103.2	134.4	130.7	142.5	-	-

자료: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기획재정부

2022년 보조금 추경 관련 주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부사업 ‘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이다.

[2022년 보조금 추가경정예산 관련 주요 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계획액	2024 계획액안
	계획액		집행액		
	당초	수정			
(4131-317) 소상공인성장지원	146,278	35,427,368	35,425,370	141,654	42,625
(4131-325)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2,243,584	7,393,584	7,390,055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1년 이후 보조금 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2014, 2016, 2017년에 전년대비 증가율이 2% 미만이었고, 2021년의 경우 기저효과로 전년대비 9.8% 증가율을 보였다. 앞에서 제시된 연도를 제외하면, 국고보조금 결산액은 2013년 이후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20년 결산액은 전년대비 44.9% 증가하였는데, 이는 COVID-19 등의 영향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됨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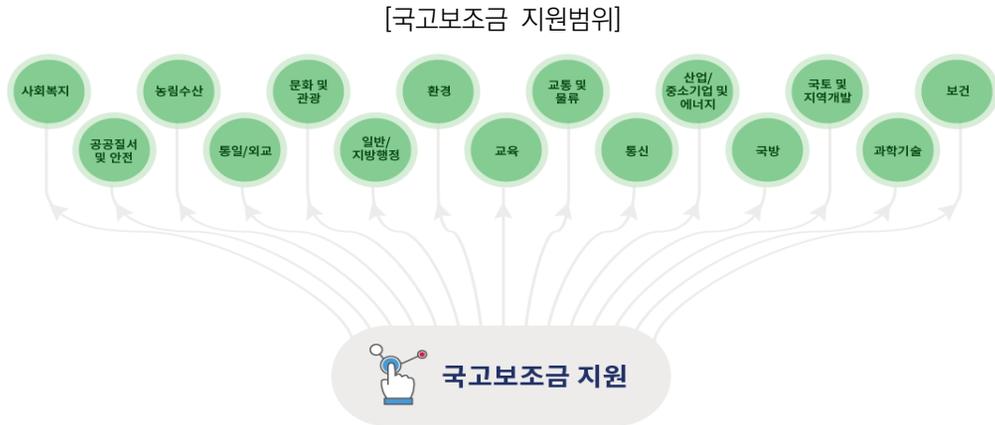
[국고보조사업 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320			330			합 계	전년 대비 증가율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01	07	소계	01	03	소계		
	민간 경상보조	민간 자본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2012	85,146	26,941	112,087	193,438	154,076	347,514	459,601	7.0
2013	93,987	25,254	119,241	248,310	149,543	397,853	517,094	12.5
2014	96,772	15,635	112,408	266,414	138,400	404,814	517,221	0.0
2015	108,385	23,703	132,088	304,307	155,038	459,345	591,433	14.3
2016	110,718	17,671	128,388	314,929	158,353	473,282	601,671	1.7
2017	108,402	17,069	125,471	330,421	147,637	478,058	603,529	0.3
2018	147,578	18,341	165,919	362,902	142,801	505,703	671,622	11.3
2019	171,386	16,430	187,816	442,407	174,197	616,604	804,420	19.8
2020	277,559	20,820	298,380	688,572	178,505	867,076	1,165,456	44.9
2021	399,009	23,656	422,665	675,852	181,507	857,359	1,280,023	9.8
2022	600,938	27,600	628,538	641,697	188,206	829,902	1,458,440	13.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고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모든 분야를 포괄하며, 2024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분야별 국고보조금 규모는 사회복지 64.4조원, 농림수산 11.6조원, 환경 8.6조원 등이다.



자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분야별 국고보조금 현황(기금 포함)]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안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일반·지방행정	19,467	1.99	16,840	1.65	13,600	1.33	9,786	0.91
공공질서및안전	18,228	1.86	12,746	1.25	12,464	1.22	18,410	1.71
통일·외교	9,182	0.94	10,608	1.04	11,206	1.10	12,923	1.20
국방	417	0.04	465	0.05	463	0.05	445	0.04
교육	6,429	0.66	10,057	0.98	9,058	0.89	8,475	0.79
문화및관광	52,034	5.32	55,002	5.37	52,800	5.16	50,139	4.67
환경	67,171	6.86	79,027	7.72	83,503	8.16	86,118	8.01
사회복지	560,407	57.27	556,716	54.40	592,531	57.90	643,573	59.89
보건	20,001	2.04	32,701	3.20	24,717	2.42	20,297	1.89
농림수산	106,925	10.93	108,937	10.64	113,701	11.11	116,017	10.8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5,440	5.67	75,668	7.39	51,383	5.02	54,396	5.06
교통및물류	38,599	3.94	40,707	3.98	38,235	3.74	34,569	3.22
통신	1,874	0.19	1,795	0.18	1,985	0.19	1,868	0.17
국토및지역개발	21,824	2.23	21,004	2.05	16,778	1.64	16,836	1.57
과학기술	547	0.06	1,191	0.12	880	0.09	656	0.06
합 계	978,545	100	1,023,464	100	1,023,304	100	1,074,507	100

자료: 기획재정부

## 1

##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분석

## 가. 현황

2023년 6월에 정부는 2024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2023년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하고,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sup>17)</sup> 또한 기획재정부는 2023년 8월에 그동안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집행·관리상 누수요인이 다수 지적되어 온 바,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전체 보조사업을 점검하여 보조금 예산을 합리화하였다고 밝혔다.<sup>18)</sup>

이와 같은 '재정 정상화'<sup>19)</sup> 기조하에 편성된 202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은 107.5조원으로, 2023년 예산 102.3조원 대비 5.1조원(5.0%) 증액되었으며, 정부 총지출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은 16.4%로 2023년 16.0% 대비 0.4%p 상승하였다.

[국고보조금과 정부총지출(예산기준) 추이(2016~2024)]

(단위: 조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안
국고보조금(A)	60.3	59.6	66.9	77.9	86.7	97.9	102.3	102.3	107.5
전년대비 증감률	3.4	-1.2	12.2	16.4	11.3	12.9	4.5	0.0	5.0
정부 총지출(B)	386.4	400.5	428.8	469.6	512.2	558	607.7	638.7	656.9
전년대비 증감률	2.9	3.6	7.1	9.5	9.1	8.9	8.9	5.1	2.8
A/B	15.6	14.9	15.6	16.6	16.9	17.5	16.8	16.0	16.4

자료: 기획재정부

17) 대한민국 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각종 부정 비리 온상 확인」, 보도자료, 2023. 6.

18) 기획재정부,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2023, 7쪽.

19) 기획재정부,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2023, 6쪽.

## 나. 분석의견

202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규모 및 정부 총지출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이 증가하였고, 일부 보조사업 예산안 편성내역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보조사업 정비 등 재정사업 정상화가 적정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전체 보조사업을 점검하고 ①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외부지적 등의 예산편성 반영, ② 유사중복·집행부진·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의 전달체계 재구조화, ③ 부정수급·회계관리 미흡 등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예산 약 4조원을 구조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실적(약 4조원)에 대하여 집계내역 및 주요 구조조정 사유별 예산 조정액 등 구조조정의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규모는 2023년 대비 5.0% 증가(102.3조원 → 107.5조원)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여 정부 총지출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승(16.0% → 16.4%) 하였다.

국고보조금 예산 규모는 2023년도에 전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2024년도 예산안에서 증가추세로 전환하였고, 국고보조금 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또한 다음 [표]와 같이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과 관련되는 민간경상보조예산은 0.2%(289억원), 민간자본보조예산은 3.5%(1,225억원) 감액에 불과하였다. 일부 민간경상보조예산안 감액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등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의 비목전환에 의한 것이다. 다음 [표]와 같이 2024년도 예산안에서 민간위탁사업비 377억원(0.5%)가 증액되었다.

[보조사업비 및 민간위탁사업비의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3 예산(A)	2024예산안(B)	(B-A)	(B-A)/A
보조 계	1,023,306	1,074,507	51,202	5.0
자치단체 보조	831,321	884,038	52,716	6.3
- 자치단체 경상보조	655,719	703,181	47,463	7.2
- 자치단체 자본보조	175,603	180,857	5,254	3.0
민간보조사업비	191,984	190,470	△1,515	△0.8
- 민간경상보조	156,601	156,311	△289	△0.2
- 민간자본보조	35,384	34,158	△1,225	△3.5
<b>민간위탁사업비</b>	<b>80,112</b>	<b>80,489</b>	<b>377</b>	<b>0.5</b>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 중 비목전환 대상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폐지’ 판정을 받은 46개 사업(22년 예산 6,329억 원) 중 11개 사업(22년 예산 684억원)이 비목전환 대상이었으나, 2023년에는 ‘폐지’ 판정을 받은 33개 사업(23년 예산 3,113억원) 중 10개 사업(23년 예산 1,351억원)이 비목전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노후공동주택세대별점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세부사업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안에서 보조금 비목에서 민간위탁 비목으로 전환되었다.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최종 판정결과별 국고보조금 감축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즉시폐지 (비목전환)	단계적폐지 (비목전환)	통폐합	감축	
					높은 수준	일정 수준
2021	예산	187	600	2	36,378	53,775
	감축규모	187	600	2	최소 3,638	최대 5,377
2022	예산	902 (682)	5,427 (2)	198	12,195	77,784
	감축규모	902 (682)	5,427 (2)	198	최소 1,220	최대 7,778
2023	예산	1,312 (1,185)	1,801 (165)	92	10,347	27,979
	감축규모	1,312 (1,185)	1,801 (165)	-	최소 1,035	최대 2,798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각년도.

둘째, 202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일부 보조사업에서 다음과 같이 기존 보조사업 예산안 편성내역의 적정성 검토, 신규 보조사업 예산안 편성 재고 등이 필요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sup>20)</sup>은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대비 4,861억 5,400만원이 증액된 2조 26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수요조사 대비 사업 물량을 9.4% 확대하였으므로 일자리 유형별 신청 추이 및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 소관 세부사업 ‘무공해차 보급사업’**<sup>21)</sup>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무공해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대비 1,664억 7,000만원 감액된 2조 3,98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다. 전기승용차 보급물량 대수가 전년 대비 상향되고 있으나, 2023년 9월말 기준 보급실적이 36%대로 저조한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보다 상향된 계획물량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물량을 일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신규 세부사업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sup>22)</sup>은 중소·중견 기업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한 보조기기 발주 계약 체결시 선금금 지급에 필요한 보증보험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안은 57억 8,5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납품업체에 대한 선금 지급이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특례를 통한 예외적인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기기 납품업체의 선금 지급을 위한 보증수수료 추가 지원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법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3. 10., pp.29~34 참조

21)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2023. 10., pp.79~92 참조

22)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 10., pp.34~40 참조

**보건복지부 소관 신규 세부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sup>23)</sup>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을 통해 정신질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지원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서 539억 4,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2024년도 예산안에서 신규 편성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계획 목표 인원 대비 실제 집행가능성이 불명확한 상황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과 지원대상 측면에서 일부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 소관 신규 세부사업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sup>24)</sup>는 북한인권 실상의 대내외 확산, 민간 통일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29억 4,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런데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사업 지원은 통일부의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확산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협의회 활동추진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3)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3. 10., pp.98~106 참조

24)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3. 10., pp.105~107 참조

## 가. 현 황

### (1)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25)에서는 의무지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그 존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도입하고 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주체인 기획재정부장관은 ①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②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④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2) 평가기준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있다.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평가항목은 크게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으로 나눌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표]와 같으며,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지원 규모별로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

(단위: 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3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3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소규모/중규모/대규모)	10
	1-5 사회적 가치 실현	△3~+3
2.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5
	2-2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1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3~+3
	2-5 평가결과 이행 여부	△3
	2-6 실집행 실적	△3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사업규모에 따른 유형화 기준]

구 분	분류 기준
소규모 사업	사업 규모 50억 이하 사업
중규모 사업	사업규모 50억 초과 200억 이하 사업
대규모 사업	사업규모 200억 초과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최종 판정 유형은 크게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으로 구분된다. 폐지의 경우 '즉시 폐지'와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단계적 폐지'로 구분되며, 정상 추진은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의 합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판정 유형]

구 분	내 용
즉시 폐지	해당 보조사업의 차년도 폐지
단계적 폐지	즉시 폐지는 아니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일몰 기한을 설정하여 폐지
통폐합	유사 사업 및 관련 사업과 통합
감축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
사업방식 변경	사업방식이나 보조율 변경 등
정상추진	적정 소요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해당 중앙관서에 통보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보조금 예산 요구 시 반영하고 관련 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정변경 등으로 평가결과 반영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sup>26)</sup>

26)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20조(결과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가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 운용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를 해당 중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재평가) 최근 3년 이내 연장평가를 실시한 사업 중 사정변경 등으로 평가결과 반영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재평가는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3)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2020년 보조사업 평가를 받은 사업 및 존속기한 3년 도래 사업을 대상으로 278개 세부사업<sup>27)</sup>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정상추진 6개 사업(2.2%), 즉시 폐지 11개 사업(4.0%), 단계적 폐지 22개 사업(7.9%), 통폐합 2개 사업(0.7%), 감축 141개 사업(50.7%), 사업방식 변경 96개 사업(34.5%)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단위: 개, %)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합 계
2019	사업수	4	8	1	105	176	155	449
	비율	0.9	1.8	0.2	23.4	39.2	34.5	100.0
2020	사업수	2	12	5	68	130	24	241
	비율	0.8	5.0	2.1	28.2	53.9	10.0	100.0
2021	사업수	5	13	1	180	194	68	461
	비율	1.1	2.8	0.2	39.0	42.1	14.8	100.0
2022	사업수	20	26	2	213	207	32	500
	비율	4.0	5.2	0.4	42.6	41.4	6.4	100.0
2023	사업수	11	22	2	141	96	6	278
	비율	4.0	7.9	0.7	50.7	34.5	2.2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7) 기획재정부는 책임운영기관평가 및 R&D평가 대상 보조사업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외 근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호에 근거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판정유형별로 향후 3년 동안, '즉시 폐지' 약 1,312억원, '단계적폐지' 약 1,801억원 등 총 3,113억원의 국고보조금 감축이 필요하며, '감축' 판정을 받은 141개 세부사업(2023년 예산 3조 8,326억원)에 대해 2023년 예산 대비 목표 감축범위를 적용하여 필요한 감축규모를 산정하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 33개(2023년 예산 3,113억원) 중 10개 사업(2023년 예산 1,351억원)이 법령 상 사무주체가 국가인 사업이므로, 사업부처의 집행책임 강화를 위해 해당 사업들의 비목을 전환(민간보조→민간위탁)하고, 보조금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감축' 판정을 받은 사업은 향후 3년간(2024~2026년) '높은 수준'의 감축과 '일정 수준'의 감축 등 두 단계로 구분하여 목표 감축범위를 적용한다. 연도별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하되, '높은 수준'은 2023년 예산 대비 10%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은 2023년 예산 대비 10% 이내의 감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감축 사업은 42개 사업(29.8%, 2023년 예산 10,347억원)으로 1,035억원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며, '일정 수준'의 감축이 필요한 사업은 99개 사업(70.2%, 2023년 예산 2조 7,979억원)으로 최대 2,798억원 감축이 필요하다.

[최종 판정결과별 국고보조금 감축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즉시폐지 (비목전환)	단계적폐지 (비목전환)	통폐합	감축	
					높은 수준	일정 수준
2023	예산	1,312 (1,185)	1,801 (165)	92	10,347	27,979
	감축규모	1,312 (1,185)	1,801 (165)	-	최소 1,035	최대 2,798

자료: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3.

## 나. 분석의견

### (1)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연계 분석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주요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환류하겠다고 밝혔다.<sup>28)</sup>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판정 유형별로 평가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 (가) 즉시 폐지 판정 사업

**환경부 소관 세부사업 ‘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즉시 폐지’ 판정을 받았음에도 2024년에 계속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즉시 폐지’ 판정을 받은 11개 세부사업 중 2024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은 환경부 소관 세부사업 ‘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이다. 동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경유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유도하여,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의 법령상 근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sup>29)</sup>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제1항<sup>30)</sup>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에서 2024년까지 3.4만대의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계획한 바 있다.<sup>31)</sup>

28)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3, 9쪽.

2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4. <생략>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6.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

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8~13. <생략>

30)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1)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2019, 43쪽.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즉시 폐지' 판정 사업 중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단위: 억원)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액 (B-A)
환경부	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	90	20	△70

자료: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3.를 바탕으로 재작성

‘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탄소중립 등의 미래 정책 기조에 따라 동 보조사업보다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지원대상 및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등)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023년말 즉시 폐지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이 특정 제작사 및 차량 모델로 국한된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한 긍정효과보다는 시장왜곡 여부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에 계속하여 반영되어 있으며, 사업물량 및 지원단가 축소<sup>32)</sup>를 통해 예산안 규모가 2023년 90억원에서 2024년 20억원으로 감액편성되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전환사업 등 확대
- '24년까지 노후경유차 80% 이상 퇴출\*을 목표로 조기폐차 지원 지속※ '19년 기준 전국 244만대 → '24년 49만대 이하
- 경유승용차 조기폐차 후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현행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 개선\* 추진 병행('20)
- \* 예)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일부(100 → 70%)만 우선 지원하고, 향후 신차 구매시 차종에 따라 잔여 보조금 차등지급(경유차 미지급, 나머지 차종 지급)
- 노후 소형 화물경유차\*
- , 어린이 통학차량\*\* 등 저소득층·민감계층대상 맞춤형 노후경유차 퇴출 지원 확대
- \* LPG 1톤 화물차로 전환시 조기폐차 보조금 외 400만원 추가 지원, '24년까지5.5만대 보급 추진
- \*\* LPG 통학차량으로 전환시 500만원 지원, '24년까지 3.4만대 보급 추진

32) ① 예산(안): ('23년) 90억원 → ('24년안) 20억원  
 ② 사업물량: ('23년) 2.6천대 → ('24년안) 8백대  
 ③ 대당 지원금 ('23년) 700만원 → ('24년안) 500만원

['(세부사업)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사업비	15,000	21,000	12,000	9,000	2,000

주: 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자료: 환경부

['(세부사업)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 예산안 산출근거]

2023년 예산 산출내역	2024년 예산안 산출내역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90억원 · LPG 어린이 통학차량 : 2,571대 × 7,000천원 × 50% = 9,000,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20억원 · LPG 어린이 통학차량 : 800대 × 5,000천원 × 50% = 2,000,000천원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다음 [표]와 같이 2022년 1월 기준으로 어린이통학차량 약 8.8만대 중 경유 차량이 7.5만대(85.3%)로 15인승 이하 소형차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현재 생산되는 전기통학차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차량으로 시장 인지도가 낮아 현장 수요가 저조하다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추후 국산 무공해차<sup>33)</sup>가 신규 차량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가스차량도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에 따른 특정용도경유차의 신규 사용제한<sup>34)</sup> (24년~)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사업구조 개편<sup>35)</sup> 등을 통한 동 사업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33)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당초 자동차 제작사는 2023년경 수소 소형 승합차 출시 계획을 밝혔으나, 차량 개발 지연으로 연기되었다.

34)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5) 환경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즉시 폐지'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향후 지원사업 개편·통합을 위해 기존 LPG 어린이통학버스 지원 사업이 통·폐합될 예정임이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청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통계('22.1.31 기준)]

(단위: 대)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CNG	전기	합계
소형 (15인승 이하)	55 (0.09%)	47,593 (78.80%)	12,731 (21.08%)	-	17 (0.03%)	60,396 (100%)
중형 (16 ~ 35인승)	9 (0.05%)	18,576 (99.73%)	-	7 (0.04%)	34 (0.18%)	18,626 (100%)
대형 (36인승 이상)	0	9,309 (98.56%)	-	136 (1.44%)	-	9,445 (100%)
총합계	64 (0.07%)	75,478 (85.32%)	12,731 (14.39%)	143 (0.16%)	51 (0.06%)	88,467 (100%)

주: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신고 차량 기준이며, 신고 대상은 운행형태(전세버스, 유상운송용 자가용, 유상운송용 외 자가용)와 관계없이, 교육시설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

자료: 환경부

그러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장평가 결과가 관련 법령 및 지침<sup>36)</sup>에 따라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계속 추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21조<sup>37)</sup>에 따라 사정변경 등으로 평가결과 반영이 어려운 사업은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sup>38)</sup>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즉시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36)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22조(예산편성 및 기타 재정운용과의 연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반드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7)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21조(재평가) 최근 3년 이내 연장평가를 실시한 사업 중 사정변경 등으로 평가결과 반영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재평가는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38) 국토교통부 소관 세부사업 ‘도심융합특구지원’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즉시 폐지’ 판정을 받았으나, 재평가를 통해 ‘정상추진’ 판정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나) 단계적 폐지 판정 사업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 중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한국한의약진흥원운영지원’,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구축’, ‘문화유산방문자센터건립’ 등 3개 사업의 ‘단계적 폐지’ 판정 사유는 각각 2025년 말 출연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적 폐지(한국한의약진흥원운영지원), 일부 내역사업의 분리(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구축), 자동종료(문화유산방문자센터건립)이므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단계적 폐지’ 사업 중 2024년도 보조사업 예산안이 증액된 세부사업은 ‘한국한의약진흥원운영지원’,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구축’, ‘문화유산방문자센터건립’이다.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단계적 폐지’ 판정 사업 중 2024년도 보조사업 예산안 증액 사업]

(단위: 억원)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보조사업 예산		평가결과
		2023년	2024년안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운영지원	122.9	123.4	출연사업으로의 전환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구축	6.0	8.2	일부 내역사업의 분리
문화재청	문화유산방문자센터건립	10	37	자동종료

자료: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3.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사업 ‘한국한의약진흥원운영지원’**은 「한의약 육성법」에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출연사업으로 비목전환 필요성을 사유로 ‘단계적 감축’ 판정을 받았다. 2024년도 예산안에는 인건비 처우개선분, 물가상승으로 인한 관리비 인상 등 기관 운영 필수경비가 증액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고유사업비의 경우 2023년 대비 감액되었다.

**여성가족부 소관 세부사업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구축’**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내역사업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타 사업으로 이관하거나 별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아,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보조금 예산안은 전액 감액되었다. 반면,

내역사업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다.

**문화재청 소관 세부사업 ‘문화유산방문자센터건립’**은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 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1~2024년으로 2024년에 자연종료 사업이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잔여사업비 37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단계적 폐지’ 판정 사업 중 2024년도 보조사업 예산안 증액 사업의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보조사업 예산		
	2023	2024안	내역사업명	2023	2024안
한국한의약진흥원운영지원	12,288	12,344	인건비	6,853	7,025
			관리비	1,806	1,977
			고유사업비	3,629	3,342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구축	784	3,415	디지털 성범죄방지 및 피해자 지원	595	0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0	816
문화유산방문자센터건립	1,000	3,700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 센터 건립 지원	1,000	3,700

자료: 각 부처

#### (다) 감축 판정 사업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축’ 판정을 받은 세부사업 중 2024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사업은 22개이며, ‘감축’ 판정을 받은 세부사업의 일부 내역(내내역)사업 예산안은 감축되었으므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보조사업의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지출 재구조화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 ‘감축’ 판정을 받은 사업의 차년도 예산안 반영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안에 증액(전년 동 포함) 편성된 22개 사업의 경우에도 평가 결과의 ‘감축’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타 내역사업을 감액 규모 이상으로 증액하여 실질적으로 감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 ① 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신규 또는 타 내역사업을 증액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부사업 ‘지역신문발전지원’**의 경우, 연장평가는 ‘(내내역)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지원사업’의 지역적 편익이 국가적 편익성보다 크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신문사 중심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정수준 감축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내내역사업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내역사업 ‘지역신문역량지원’은 증액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부사업 ‘농촌고용인력지원’**은 연장평가에서 실집행률이 2020년 78.7%에서 2021년 58.2%, 2022년 51.6%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2022년 실집행률이 예산현액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2022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내역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2.0%로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내역사업인 ‘영농도우미’ 예산안이 신규로 반영되는 등의 사유로, 동 사업의 2024년 보조사업 예산안은 2023년 대비 70.2억원(55.2%) 증액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부사업 ‘전력해외진출지원’**의 경우, 연장평가는 내역사업 ‘광융합산업글로벌경쟁력강화지원’이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인

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타 지원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이 존재하고,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내역사업 ‘광융합산업글로벌 경쟁력강화지원’ 예산이 전액삭감되었으나, 내역사업 ‘원전산업수출기반 구축’의 예산안은 증액되었다.

## ② 자동종료 및 비목전환 대상 사업 예산안을 증액한 경우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감축’ 판정을 받고도 2024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사업 22개 중 비목전환을 사유로 ‘감축’ 판정을 받은 사업은 10개이며, 1개 사업은 자연종료 사유로 감축판정을 받았다. 이 중 비목전환에 의한 감축은 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나, 정부 총지출 관점에서 재정규모가 감소된 것은 아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사업비로의 비목전환 필요성에 의해 ‘감축’ 판정을 받은 사업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 내역사업 ‘중양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예산은 2023년 민간경상보조(320-01) 2,954백만원에서 2024년안 민간위탁사업비(320-02) 2,988백만원으로 비목전환되었다.

**여성복지복지부 소관 세부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의 경우, 내역사업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예산은 2023년 민간경상보조(320-01) 575백만원에서 2024년안 민간위탁사업비(320-02) 575백만원으로 비목전환되었다.

**한편, 해양수산부소관 세부사업 ‘물류기업유치지원’**의 경우, 내역사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은 전자상거래 등 국내외 물류수요에 대비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활동지원 등을 위해 인천항·부산항의 배후단지 내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은 자연종료 예정(인천항 2024년, 부산항 2025년)이며, 연차별 공사비를 반영하여 2024년도 예산안은 증액되었다.

[(세부사업)물류기업유치지원] 예산안 산출근거

2023년 예산 산출내역	2024년 예산안 산출내역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 3,845백만원 가.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3년차) : 2,500백만원 나. 부산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2년차) : 1,030백만원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 11,735백만원 가.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준공) : 4,400백만원 나. 부산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3년차) : 7,335백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감축' 판정 사업 중 2024년도 보조사업 예산안 증액 사업 현황]

(단위: 억원)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보조사업 예산		감축판정 사유
		2023	2024안	
해양수산부	물류기업유치지원	35.3	117.4	자연종료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003.1	5,414.4	비목전환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맞다문화가족지원	1,065.4	1,431.0	
농림축산식품부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	57.0	199.8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2,072.8	2,215.2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126.0	229.2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지원	286.2	355.7	
보건복지부	노인단체지원	780.7	836.2	
보건복지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1,607.8	1,635.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야재난관리지원	6.1	10.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체인력지원	63.2	64.9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지원	46.1	47.1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대회국내 개최지원	371.5	574.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선수양성지원	1,237.0	1,435.6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수급관리	926.8	1,017.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	127.2	197.4	
문화체육관광부	고품질관광기반 조성 (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반 조성)	403.9	462.4	
기획재정부	친환경소비생활및저탄소생산기반구축지원	107.3	123.7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44.6	52.5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77.5	84.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홍보	22.3	25.1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76.8	79.6	

주: ( )는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

자료: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3.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감축' 판정 사업 중 2024년도 보조사업 예산안 증액 사업의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보조사업 예산		
	2023	2024안	내역사업명	2023	2024안
물류기업유치지원	4,145	12,131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3,530	11,73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01,981	546,10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97,354	541,444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2,954	0
건강가정및 다문화가족지원	107,953	146,131	가족센터 운영	320	100
				330	50,91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0,437	11,813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7,630	33,873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127	247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	5,532	5,64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575	0
노자스마트농업사업	5,700	19,980	스마트영농확산기반구축	4,515	18,060
			사업단 운영	975	1,500
			데이터 수집·활용	210	420
장애인일자리지원	207,299	222,695	장애인일자리지원 (지자체보조)	206,137	221,524
			전문관리체계 구축	1,141	0
모자보건사업	13,396	24,350	산전·산후 건강관리 강화	320	506
				330	174
			난임부부 지원	320	576
				330	1,869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 및 배려 캠페인	78	78
			성·생식건강증진	320	812
				330	0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456	228
고위험임산부 지원	320	384			
	330	7,457			
산후조리원 평가 및 관리	285	285			
장애인의료비지원	28,624	35,868	장애인의료비	320	300
			330	28,324	
노인단체지원	79,468	84,341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810	900
			대한노인회운영지원	2,436	3,008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421	0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2,326	2,385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68,396	77,326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보조사업 예산			
	2023	2024안	내역사업명	2023	2024안	
사립관리전문단체개선	160,978	165,029	사립관리정책지원센터 운영	0	992	
			통합사립관리사 지원	18,229	18,643	
			자활사립관리	2,515	2,578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	54,065	54,642	
			아동보호체계구축 지원	320	215	0
				330	20,316	20,757
			의료급여관리사	19,067	19,536	
방문건강관리	641	0				
방송분야재난관리지원	863	1,256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607	1,0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	6,535	6,650	대체인력 인건비	6,035	6,307	
			대체인력 운영비	320	125	125
				330	163	58
지역신문발전지원	8,251	7,282	지역신문역량지원	2,029	2,118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지원	829	640	
			지역공헌활동지원	2,578	2,588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지원	3,600	3,600	
국제대회국내개최지원	37,146	57,491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지원	5,000	6,000	
			국제대회유치개최 역량 강화	500	500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지원	270	0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9,500	0	
			올림픽 유치 지원	1,000	1,000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지원	4,176	0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문화프로그램 운영	13,100	0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0	46,391	
			우수선수양성지원	124,696	143,564	대표훈련지원
선수촌운영	40,810	52,441				
후보선수육성	11,100	12,426				
청소년대표육성	3,372	5,110				
꿈나무선수육성	5,268	6,042				
한국동계스포츠육성	11,522	10,789				
축산물수급관리	96,043	101,949	낙농통계관리시스템	441	600	
			산물수급안정(경상)	35,789	43,257	
			생계및소득안정	1,100	1,100	
			학교우유급식	320	240	0
				330	46,800	46,508
			계란유통센터 시설현대화	7,916	4,456	
			비육용암소시장육성	0	1,200	
			가축사육제한보상금	0	4,628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보조사업 예산			
	2023	2024안	내역사업명	2023	2024안	
농촌고용인력지원	12,722	21,911	농촌인력중개센터	7,701	11,081	
			도농인력중개플랫폼	800	800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4,220	860	
			영농도우미	0	7,000	
고품질관광기반조성 (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반 조성)*	45,014	46,535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914	549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8,918	8,398	
			고품격 관광 활성화	14,641	21,646	
			코리아그랜드세일	3,141	2,670	
			관광 편의성 제고	5,580	3,244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	10,341	9,047	
			한국관광 품질관리	2,890	1,800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유통활성화 지원	1,560	1,560				
친환경소비생활및 자연생태관광지원	23,988	31,090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자동차 분야 운영	10,730	12,37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4,457	5,245	시설 기능보강 지원	983	864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지원	713	638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369	1,369	
			사회복무요원인력경비 지원	341	412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997	1,962	
			한부모가족복지단체지원	54	0	
전력해오진출지원사업	7,745	8,463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	6,921	8,463	
			광융합산업글로벌경쟁력강화지원	824	0	
전력산업홍보	9,407	7,330	전력시장교육	103	0	
			전기절약홍보	3,442	2,218	
			신재생에너지홍보	868	0	
			전기안전홍보	321	289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사업	7,760	7,961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	5,939	6,230	
			이주여성상담소 운영지원	1,335	1,379	
			북한이탈 여성	320	58	0
			폭력 피해예방 및 지원	330	352	352

주: 1. 음영 표시된 사업은 감축 대상 내역(내내역)사업

\* ( )는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

자료: 각 부처

(라) 정상추진: 보조사업 통합 적정성 검토 필요

민간보조사업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목적 및 보조대상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보조대상 기관별로 세부사업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다음 [표]와 같이 6개 사업을 ‘정상추진’으로 판정하였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정상추진’으로 판정을 받은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사업 ‘제대혈공공관리’는 세부사업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사업’과 통합되었다.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정상추진’ 판정 사업의 2024년도 보조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보조사업 예산		증감액 (B-A)
		2023년 (A)	2024년 안(B)	
행정안전부	전직대통령및유족예우	2.5	2.5	0.0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수매·공급	15.4	19.2	3.8
산업통상자원부	세계엑스포참가지원	105.7	172.8	67.1
보건복지부	제대혈공공관리*	12.8	0.0	순 감
해양수산부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52.5	52.5	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복합편의시설운영관리	1.0	1.0	0.0

주: \* 2024년부터 세부사업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의 내역사업으로 변경

자료: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3.를 바탕으로 재작성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사업 ‘제대혈공공관리’는 적정규모의 기증제대혈 확보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기증제대혈 은행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기증제대혈을 백혈병 등 악성질환 치료 및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 자원으로 활용하고, 이식에 적합한 기증제대혈의 검색·통보·공급과 이식 결과분석, 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대혈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제대혈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법률상 근거는「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3조, 제31조 등<sup>39)</sup>이다.

3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7조(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증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세부사업 '제대혈공공관리'를 세부사업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사업'과 통합하였는데,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사업'의 법령상 근거는 「암관리법」 제46조(비용지원)<sup>40)</sup>이다.

[사업별 근거법률]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근거법률
공공보건 의료확충	장기 기증 활성화 지원	골수기증 희망자 검사지원 사업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검사 지원	「암관리법」 제46조
			조혈모세포기증 활성화 홍보	
	제대혈 공공 관리	제대혈 공공관리	기증제대혈은행 지정 및 지원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 제31조
			제대혈 정보관리 및 홍보	
			제대혈 정책관리	

자료: 보건복지부

제대혈은행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1. 제대혈기증 및 기증제대혈 관리 업무

2. 기증제대혈 데이터베이스 등록

3. 기증제대혈의 품질검사 및 관리의 정확도 평가 업무

4. 그 밖에 기증제대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대혈기증에 관한 홍보 및 기증제대혈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제대혈정보센터의 설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증제대혈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대혈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대혈정보센터는 제대혈이식 등을 위하여 기증제대혈제제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제대혈은행의 심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제제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40) 「암관리법」

제46조(비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략)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시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드는 비용

정부는 골수기증과 제대혈기증이 모두 조혈모세포 기증이라고 판단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제대혈공공관리사업’을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의 내역사업 ‘기증제대혈은행 지정 및 지원’으로 변경하였다.

[골수기증 희망자검사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보조사업 예산		
	2023	2024안	내역사업명	2023	2024안
골수기증 희망자검사지원	3,844	5,087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검사지원	3,774	3,582
			기증제대혈은행 지정 및 지원 (제대혈공공관리)	0	1,282

주: ( )는 2023년 세부사업명  
자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2023)에서 3년 이상 지원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① 사업목적·대상 등이 유사한 경우 통·폐합하고<sup>41)</sup>, ② 원칙적으로 보조대상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sup>42)</sup>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제대혈공공관리’ 및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은 조혈모세포라는 동일한 사업대상을 설정하고 있지만, 사업목적 및 보조대상 기관은 상이하다.

각 사업들의 목적은 다음 [표]와 같으며, ‘제대혈공공관리사업’은 기증제대혈을 백혈병 등 악성질환 치료 및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 자원으로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은 골수기증 희망자에 대한 인간백혈구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 검사비 및 사전·사후 관리비 지원, 조혈모세포 기증 이식대기자의 이식대기시간을 줄이고, 이식성공률을 제고하여 암 치료율 향상 및 국민의 암 부담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41)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2023, 104쪽.

42)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2023, 105쪽.

[조혈모세포 관련 사업별 근거법률 및 사업목적]

세부사업명	근거법률	사 업 목 적
제대혈공공 관리사업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 한 법률」 제 17 조, 제 23 조, 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규모의 기증제대혈 확보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기증제대혈 은행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기증제대혈을 백혈병 등 악성질환 치료 및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 자원으로 활용</li> <li>- 이식에 적합한 기증제대혈의 검색·통보·공급과 이식 결과분석, 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대혈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제대혈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li> </ul>
골수기증 희망자검사 지원	「암관리법」 제46조	골수(조혈모세포) 이식 대기자들이 비혈연 골수 기증자의 골수를 적기에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를 모집하여 골수기증 희망자에 대한 HLA 검사비 및 사전·사후 관리비 지원, 조혈모세포 기증 이식대기자의 이식대기시간을 줄이고, 이식성공률을 제고하여 암 치료율 향상 및 국민의 암 부담 감소에 기여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대상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혈공공관리와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의 보조대상 기관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을 제외할 경우 중복되지 않는다.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의 기증희망자은행부는 기증희망자 홍보 및 등록을 담당하고, 기증제대혈은행부는 기증제대혈 수집·보관 및 MDSC<sup>43)</sup>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3) MDSC(Myeloid-derived suppressor cells, 골수유래억제세포): 면역억제 기능을 가지는 골수 유래 미성숙 myeloid cell의 집합

[내역사업별 보조대상 기관]

내역사업명	보조대상 기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지원	대한적십자사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사)생명나눔실천본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기증희망자은행부	
기증제대혈은행 지정 및 지원 (제대혈공공관리)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기증제대혈은행부	
	서울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
	동아대병원	동아대병원제대혈은행

주: ( )는 2023년 세부사업명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정상 추진’으로 판정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 기준을 고려할 때, ‘제대혈공공관리’와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 통합을 재검토하는 등 각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개선방향

### (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을 내역사업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보조사업은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 여러 개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세부사업 단위로 수행되고 있으나, 평가대상 보조사업의 대부분은 세부사업 하위의 내역(내내역)사업이다. 예산사업의 지원 형태는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로 구분되는데, 세부사업은 여러 지원형태의 내역(내내역)사업들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단위(세부사업)와 실제 평가대상 사업단위(내역 또는 내내역)가 상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세부사업 내 일부 내역(내내역)사업이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등의 판정을 받을 경우, 판정 결과는 해당 내역(내내역)사업에 적용되고 있다.<sup>44)</sup> 반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감축’으로 판정될 경우, ‘감축’ 예산규모는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기준으로 한다.<sup>45)</sup> 또한 내역사업별로 사업착수 시점이 다르므로, 타 내역사업의 평가년도에 시작하는 신규 내역사업은 착수년도에 연장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 일례로, 농촌진흥청 소관 세부사업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의 내역사업 ‘농업용 로봇 실증단지 구축’은 2023년에 착수된 사업이나,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이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구축’은 성과지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유사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대상을 세부사업 혹은 내역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sup>46)</sup>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대

44)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소관 ‘(세부사업)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구축’은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내역사업)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타 사업으로 이관하거나 별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아, ‘(내역사업)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보조금 예산안은 전액 감액되었다. 그러나 ‘(세부사업)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구축’은 존속되고 있다.

4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높은 수준 감축’ 판정을 받을 경우, 세부사업의 전체 보조금 1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따라서 ‘높은 수준 감축’ 판정을 받은 내역(내내역)사업의 예산이 세부사업 보조금의 10% 미만일 경우, 해당 세부사업 내의 타 내역(내내역)사업의 예산도 감액되어야 한다.

46) 기획재정부, 「2023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기준」, 2023.

상은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의 '세부사업'이지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도 다음 [표]와 같이 내역사업을 공통 집행관리단위로 설정하여, 중앙→지자체→민간보조사업자→최종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있다.<sup>47)</sup>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보조사업 관리정보]

기본속성	내역사업 기본정보 제공	사업목적, 지원대상, 근거법령, 보조형태 등
공통속성 (9개)	내역사업별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업들을 중복사업으로 분류 가능	서비스유형 : 보건, 안전, 교육, 문화, 고용 등
		지역별 : 국내(17개 시도 구분), 국외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년 등
		소득수준별 : 기초생보, 차상위, 차차상위 등
		경제활동별 : 농업인, 임업인, 축산업인, 창업 등
		교육단위별 :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기업규모별 :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가구구성별 : 다문화, 새터민, 한부모, 조손가정 등
성별 : 남성, 여성		
개별속성	내역사업별 특수성을 고려	사업관리에 대한 주무부처 특수성 고려

자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gosims.go.kr/hg/hg001/retrieveMainFnct.do>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 여러 개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는 경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7)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gosims.go.kr/hg/hg001/retrieveMainFnct.do>>

(나) 보조사업에 대한 중복평가 지양 필요

정부는 사업성과평가에 대해 세부사업 단위로 1사업 1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단위를 세부사업으로 유지할 경우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중복평가를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① 성과목표관리와 ② 사업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성과목표관리는 프로그램 단위로 시행하고, 사업성과평가는 세부사업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포함한 11개의 사업성과평가제도<sup>48)</sup>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사업성과평가에 대해 세부사업 단위로 1사업 1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다음 [표]와 같이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에 R&D, 균형발전, 재난안전, 복권기금평가의 대상사업을 제외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일자리평가 및 중소기업평가의 대상사업을 제외하였다.

[2023년 재정사업자율평가 주요 변경내용]

	2022년	2023년
평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li> <li>◆ 단위사업 기준(1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은 5억원 이상)</li> <li>◆ R&amp;D, 균형발전, 재난안전, 복권기금평가 대상을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세부사업 기준(3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은 10억원 이상)</li> <li>◆ 중복평가 배제 대상에 일자리평가, 중소기업평가까지 확대</li> </ul>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22회계연도 평가)」, 2023. 2~3쪽

그런데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사업 ‘중증장애인자립 생활지원’과 같이, 예산의 대부분이 보조금인 세부사업은 연장평가 외에 추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받게 된다. 동 사업은 2023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연계성과 포괄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성과지표 개선 및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지원’의 민간위탁 비목전환을 추진할 것을 지적받았다.

48) (기재부) 자율평가,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 기금평가, 보조사업연장평가, 복권기금평가, (과기부) R&D사업 평가, (고용부) 일자리사업 평가, (균형위) 균형발전 평가, (행안부) 재난안전 평가, (중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

[중증장애인자립 생활지원 예산안의 비목별 분류]

(단위: 백만원)

비 목	2022년	2023년	2024년안
·일반연구비(260-01)	-	550	-
·민간경상보조(320-01)	2,008	1,950	1,582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326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6,910	4,825	4,928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단위를 세부사업으로 유지할 경우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에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사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세부사업의 일부 내역사업만 보조사업일 경우, 현행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일부 내역사업만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세부사업 예산 중 보조금 예산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에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사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현 황

기획재정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sup>49)</sup>에 따라 동 법과 동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9조제1항<sup>50)</sup>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sup>51)</sup>는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sup>52)</sup>을 예산

### 49)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9조(보조사업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사전절차 이행 여부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실시실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5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적격성 심사의 심사대상, 심사절차, 심사방법, 등 심사기준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최종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한다.
- ⑤ 각 부처는 적격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 할 수 있다.

### 52) 심사제외 대상

-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 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 국가재정법 제22조에2항 제4호의2에 따른 예비비 사용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성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격성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관서의 장은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2024년도 예산안 또는 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관서 자체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평가자료(결과) 및 근거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부처가 제출한 적격성 심사 평가자료(결과)에 대한 검증·재검토를 시행한다. 최종 심사결과는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건부로 적격을 판정한다.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 내용]

구 분	내 용
심사대상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5년간의 국고보조금 합계 기준)
심사기준 (평가지표별 배점)	시설사업: ① 사업 추진의 근거와 필요성(15점), ② 구축, 운영방식의 적정성(10점), ③ 비용 산정의 적정성(15점), ④ 비용대비 사업효과(20점), ⑤ 보조의 근거(10점), ⑥ 보조 사업자의 적정성(15점) ⑦ 보조금 관리방안의 적정성(15점) ※ 지원사업은 시설사업과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이 상이
심사방법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
심사 면제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등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 - 재정지출·사업 관리제도 운영실태 II -」, 2022, 30쪽.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 지역지원, 세종·제주 계정) 사업 중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
- 개별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 주관으로 사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
- 기타 기존 사업의 회계·기금변경, 기존 사업의 분리 및 통합, 격년제 사업, 심사 중 보조금외 비목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국고 10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축소되는 등 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

## 나. 분석의견: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내실화 필요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신규로 연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중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받았던 사업에서 전체 연장평가 대상사업 대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판정 비율이 높으므로, 신규 보조사업 도입시 적격성 심사를 내실있게 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3년마다 시행되며,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사업은 2020년에 연장평가를 받은 사업 및 2023년에 신규로 연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에 신규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은 2020년에도 연장평가를 받은 기존 보조사업 대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판정 비율이 높다.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단위: 개, %)

구 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추진	합계
전체	사업수(a)	11	22	2	141	96	6	278
	비율	4.0	7.9	0.7	50.7	34.5	2.2	100.0
기존	사업수(b)	3	5	0	105	67	5	185
	비율	1.6	2.7	0.0	56.8	36.2	2.7	100.0
신규*	사업수(c)	8	17	2	36	29	1	93
	비율	8.6	18.3	2.2	38.7	31.2	1.1	100.0
b/a		27.3	22.7	0.0	74.5	69.8	83.3	66.5
c/a		72.7	77.3	100.0	25.5	30.2	16.7	33.5

주: \* 신규는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대상사업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3.를 바탕으로 재작성

신규 보조사업의 상당수는 주무관청이 자체적으로 검토·선정하므로, 외부평가인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비해 간략히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대상 사업들은 기획재정부의 적격성 심사를 거치므로, 연장평가에서 부정적 판정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신규로 연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보조사업 중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받았던 19개 사업의 판정결과를 살펴보면, 19개 사업 모두 폐지, 감축, 통폐합 등의 판정을 받았다.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 중 적격성 심사 시행 사업]

적격성 심사 연도	소관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연장평가 판정
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인미디어컴플렉스조성	감축
2020	기획재정부	공공시설옥상녹화	단계적폐지
2021	국토교통부	교통사고예방지원(교통안전시범도시사업)	감축
2021		교통사고예방지원(교통안전취약지구개선사업)	
2020		교통사고예방지원(스마트교통안전도시지원)	
2022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대회국내 개최지원(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문화프로그램운영)	감축
2022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확충(환경개선)	감축
2020	산업통상자원부	노후공동주택세대별점검	즉시폐지
2022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온라인거래소운영)	사업방식변경
2022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통합플랫폼구축)	
2020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	사업방식변경
202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지역특화재생지원)	감축
2020	국토교통부	디지털물류실증단지조성	감축
2020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기업성장집중지원	감축
2020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및추모사업지원(화랑유원지명품공원조성사업)	감축
2019		세월호추모사업지원(4.16재단운영지원)	
2021	국토교통부	수소물류시스템구축	통폐합
2020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	감축
2020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	감축
2020	국토교통부	스마트공동물류센터건립지원	단계적폐지
2018	농촌진흥청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	감축
2019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사업방식변경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사업들이 연장평가에서 ‘폐지’, ‘감축’, ‘통폐합’ 등의 부정적 판정을 받은 것은 적격성 심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부 사례들은 적격성 심사 내실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소관 세부사업 ‘공공시설옥상녹화’**는 연장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쉼터사업과의 유사 중복 우려 등에 따라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다. 연장평가는 동 사업이 목표로 하는 있는 폭염피해 방지 및 녹지공간 확대 등을 국가 지원을 통해 추진하기보다는 지역 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적격성 심사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부사업 ‘노후공동주택세대별점검’**은 연장평가에서 비목 전환 필요성에 따라 ‘폐지’ 판정을 받았다. 연장평가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53)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해야 하는 사무이며,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비목 전체를 민간위탁사업비 비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적격성 심사에서 검토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소관 세부사업 ‘수소물류시스템구축’**의 경우, 연장평가는 동 사업이 20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 도입을 목표로 하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1.11)를 달성하기 위해 10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량용 수소충전소를 매년 2개소씩 구축·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동일 부처에서 수행하는 타 세부사업과의 통폐합 검토 대상이라고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는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을 위한 수소 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이며, ‘수소물류시스템구축’은 10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량 전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호 유사성이 있으므로,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두 개의 보조사업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소물류시스템구축’을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

53)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원'으로 통폐합하지만, '수소물류시스템구축'의 사업계획 및 예산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은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21년에 이루어진 '수소물류시스템구축' 적격성 심사에서 사업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및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표]와 같이 유사하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사후평가이므로 '사회적가치 실현', '평가결과 이행여부', '실집행 실적' 등의 평가항목을 추가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성과평가센터는 두 평가를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적격성 심사 평가자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단의 분과장들로 구성된다.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는 사업시행 이전에 수행되므로 사업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연장평가와 차이점이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방식 및 중복성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내실있게 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사업 평가별 평가항목 비교]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지표	평가요소	
1) 사업 추진의 근거와 필요성	◦법적 근거, 정부정책 연관성 ◦수요, 요구수준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 구축, 운영방식의 적정성	◦기술적 적정성 ◦운영방식의 적정성	2-2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3) 비용 산정의 적정성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4) 비용대비 사업효과	◦비용대비 사업효과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5) 보조의 근거	◦보조대상에 관한 법적근거 ◦보조율 적정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6) 보조사업자 적정성	◦사업 적합성(시설운영능력, 과거실적) ◦재무 적합성(자부담능력, 재무안전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7) 보조금 관리 방안의 적절성	◦부정수급방지 ◦현장방문, 정산 및 사후관리 등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	1-5 사회적가치 실현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2-5 평가결과 이행여부 2-6 실집행 실적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가. 현 황

### (1) 부정수급 개념 및 유형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제1항제6호54)에서 ‘부정수급’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55)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56)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57)에도 해당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 5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 5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5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3. <생 략>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부정청구 등’은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이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구 분	보조금 환수
부정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부정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지급오류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자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재작성

부정수급 유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부적으로 ‘부정사용’, ‘법령위반’, ‘부정수령’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주체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로 구분될 수 있다.

것을 말한다.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7.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구분

구 분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처 분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유 형	부정 사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위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정 수령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부정수급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어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은 다음 [표]와 같이 대표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부정수급 유형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행위주체별 부정수급 유형]

구 분	사 례
공무원	공무원 부패, 태만, 부적정한 재량행위, 담당자 착오, 행정시스템 오류/미비 등
보조사업자	허위신청 및 수급, 중복신청 및 수급, 사업비 부풀리기 및 자부담회피, 목적 외 사용, 인력 허위 등재, 지출내역 중복증빙, 사업 쪼개기, 무단담보, 무단입대 등
보조금수령자	허위신청 및 수급, 중복신청 및 수급, 수급자격자 명의도용·대여 등
제3자	자부담 대납, 계약업체와 부정수급 공모 등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 가이드라인」, 2022.3., 6쪽.

부정수급 주요 빈발 유형은 허위신청, 정산서류 조작, 부적정 계약거래, 중요재산 임의처분 등이며, 오류에 의한 보조금 수급으로 볼 수 있는 행정착오, 사정변경 등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부정수급 주요 빈발 유형]

구 분		내 용
허위 신청	허위 인력	근로자, 원생, 가족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등원하지 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소득·재산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보조금 허위 신청(소득·재산 미신고, 축소신고)
	기타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증빙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출결		보육시간, 근로시간, 훈련시간 등 출석일수 허위신고, 대리출석 등 보조금 지급요건에 출결이 포함되는 경우의 허위 출결
가격 부풀리기		공사비, 장비 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과다 수령
정산서류 조작		고정 지출 증빙자료를 중복 사용, 폐업 사업처 세금계산서 사용 등
부적정 계약거래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 및 직원 명의의 거래업체 등 특정관계 거래처와 계약을 통해 보조금 부정 집행
자부담 회피·대납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을 (정당한보조금+자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수령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 서비스 제공 시간 보다 과다 청구, 해외출국자 결제 등
목적외 사용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중요재산 임의처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을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처분(대여, 양도, 담보 등)
기타 (협의를 부정수급)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광의의 부정수급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행정 담당자의 실수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한 보조금 오지급
	행정시차	보조금 수급 자격요건 등의 변동 정보가 행정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인 보조금 오지급
	사정변경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타	그 외 보조사업자 등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부적정 지급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 가이드라인」, 2022.3., 5쪽.

## (2) 부정수급 관리체계

정부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2013.1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2014.12.),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2018.1.11.)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18.1)을 통해, 정부는 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개선, ② 3중 점검·감시 체계 구축, ③ 부정수급 점검 강화, ④ 신고 활성화 및 국민인식 제고 등을 추진하였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이행실적(‘19.1월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18.1월) 이행실적(‘19.1월 기준)]

구 분	내 용
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나라도움) 부정수급 모니터링 정교화, 사업별 자격검증 DB 구축, 수급자 자격변동 자동알림, 공적자료 연계 확대</li> <li>○ (관리조직 정비) 부처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의무구성(‘18.3월), 시도 점검 전담조직 설치(14개 설치완료)</li> <li>○ (관리 내실화) 부정수급 관리 TF 구성운영(‘18.2월 구성),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18.12)</li> </ul>
②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소관부처 부정수급 정보 입력 의무화(통합관리지침 개정), e나라도움 교육 강화</li> <li>○ (주민참여 상시 자율감시) 광역지자체별 국민감시단 구성, 주민자치기구 대상 부정수급 감시 필요성·제보방법 홍보 완료</li> <li>○ (유기적인 상시점검·단속) 유형별 사례집 발간(5개 부처 완료)</li> </ul>
③ 부정수급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수급 빈발분야 표본·전수조사) 집중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li> <li>○ (운영기관 점검 노력 제고) 연간 점검계획 수립제출(‘18.3),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부정수급 관리항목 배점 확대 등</li> </ul>
④ 신고 활성화 및 국민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활성화) 부정수급 집중신고·홍보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표준안 마련</li> <li>○ (공익신고자보호 교육·홍보) 34개 부처가 완료</li> </ul>

자료: 국무조정실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2023년 2월에 제정된 국무총리훈령(제837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내에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을 설치하였다. 기존 기획재정부의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보

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부처·분야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의심사업 현장점검체계를 운영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 집행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 (3)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은 상시적인 통계 및 비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통계 자료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부정수급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며, 2022년 부정수급 환수 현황은 46,856건, 245.0억원이다. 다음 [표]의 ‘환수’는 주무관청 등에서 적발하여 환수한 전체 부정수급 통계치이며, 행정착오, 행정시차, 사정변경 등의 지급오류(광의의 부정수급)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다. ‘의심’ 및 ‘적발’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부정수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 또는 적발 사업의 건수 및 금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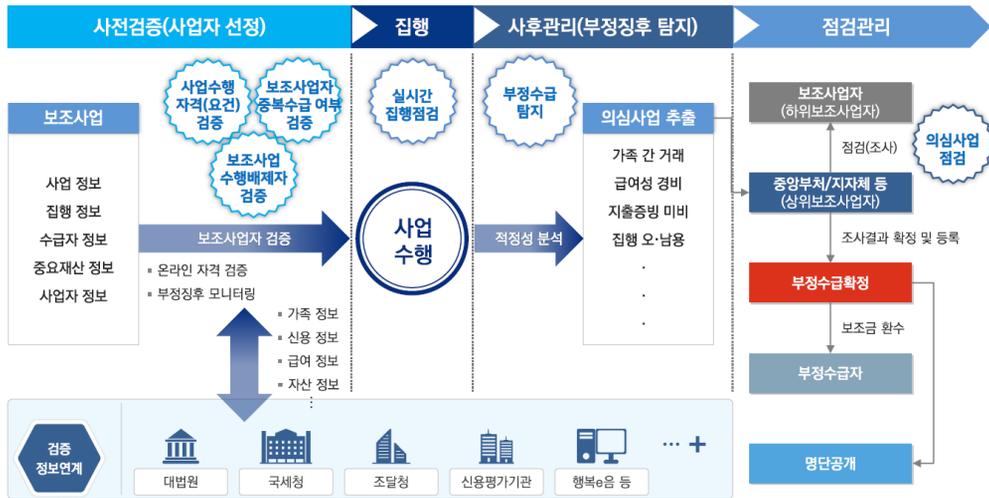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현황(사업년도 기준, '23.9월 추출)]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환수	건수	132,758	103,428	65,477	66,966	46,856
	금액	594.7	209.4	286.6	345.6	245.0
의심 (e나라도움)	건수	4,291	7,175	3,853	4,243	4,603
	금액	2,319	2,734	2,662	1,757	2,379
적발 (e나라도움)	건수	18	154	132	231	260
	금액	1.7	25.0	31.5	34.8	98.1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체계]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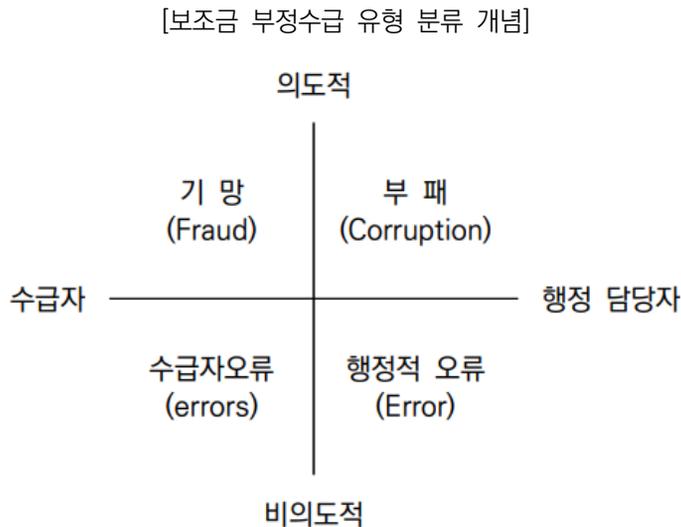
기획재정부 및 보조사업부처의 부정수급 적발과 별도로, 경찰청은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단속기간은 2023년 6월 19일~12월 31일(196일)로, 8월 27일 기준으로 총 156건을 검거·송치하였다.

## 나. 분석의견

###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유형별로 관리할 필요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관리·분석하여 체계적인 부정수급 감소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착오, 행정시차, 사정변경 등의 유형별로 부정수급 감소 목표치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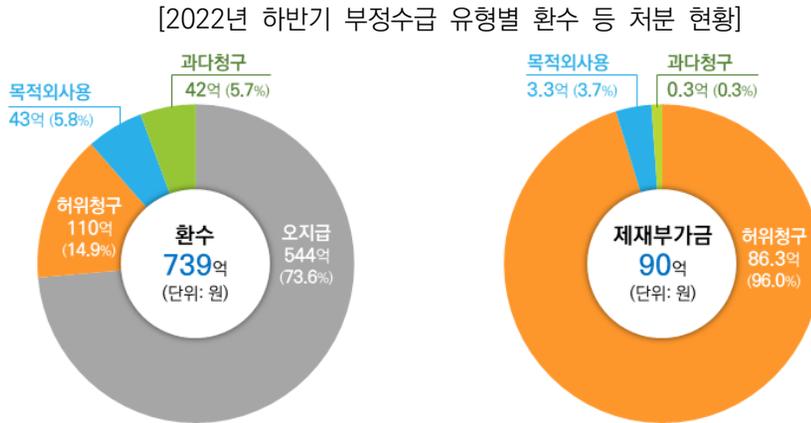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다음 [그림]과 같이 부정수급 의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오류는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체계 개선 및 교육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개선이 가능할 수 있으나, 부패와 기망은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 부정수급의 부패와 기망에 대한 대책은 오류에 대한 대책과 다를 것이다.



자료: 탁현우·권오성,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의 위험성 기반 관리체계 효율화방안」, ISSUE PAPER, 한국행정연구원, 2020, 7쪽.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내역사업 단위로 관리하고 있고, 하나의 내역사업 내에는 여러 보조사업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사업별로 적발되는 부정수급의 유형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보조금 부정수급의 유형별 현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유형별 자료를 살펴보았다. 국가권익위원회(2023)는 2022년 하반기 보조금 등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유형별 환수 등 처분 현황을 발표하였는데, 다음 [그림]과 같이 부정수급 환수액의 73.6%가 오지급에 기인한 것이었다.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환수		제재부가금		가산금	지급중 단	체납처 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73,931	192,415	8,989	661	50	7,212	342
오지급	54,412	172,654	-	-	9	2,562	267
허위청구	11,016	9,316	8,629	629	12	2,501	27
목적외사용	4,258	1,241	334	29	28	413	29
과다청구	4,245	9,204	26	3	1	1,736	1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원 환수, 90억원 제재부가금 부과」, 보도자료, 2023. 6. 23.(금) 10:00

국고보조사업은 다수의 행위자(부처, 지자체, 민간 등)가 다양한 기능(정책분야)을 다소 복잡한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하고 있어 관리가 복잡하므로,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체계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이해를 통하여 사전적 예방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sup>58)</sup>

58) 탁현우·권오성,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의 위험성 기반 관리체계 효율화방안」, ISSUE PAPER, 한국행정연구원, 2020.

따라서 부정수급 관리 기관들은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부정수급 감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지급은 행정착오, 행정시차, 사정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므로, 59) 부정수급에 대한 효율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행정착오, 행정시차, 사정변경 등의 유형별로 부정수급 감소 목표치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이다.

## (2) 부정수급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체계 강화 필요

**부정수급 관리·단속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부처 및 경찰청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기망·부패 유형의 부정수급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과 공유하여 수사 및 환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sup>60)</sup>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sup>61)</sup>는 신고 기관을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된 복지분야 부정수급 신고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등 종합적 관리 및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15일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국민권익위에 설치하고, 2015년 1월에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였다. 2023년 5월에 공공재정환수제도과의 기능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 통합하고, 부서 명칭을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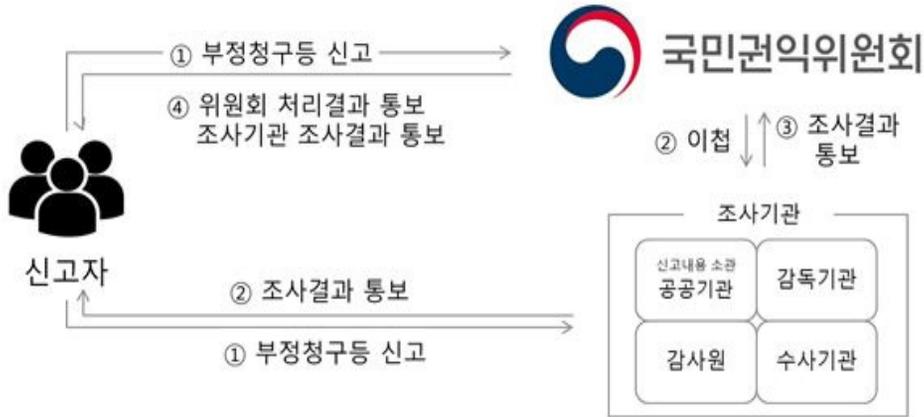
59)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 가이드라인」, 2022.3., 5쪽.

6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정부가 제안하여 2020년에 시행된 법률이다.

6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부정청구등의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그런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한 기관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수사기관 외 신고 시, 행정청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판단될 때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sup>62)</sup>는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 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행정청은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sup>63)</sup>은 중앙관서의 장은 집행점검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의뢰 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은 부정수급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 적극적인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경찰청은 범죄 혐의점이 있을 시 수사를 개시한다.<sup>64)</sup> 경찰청은 신고·고소·고발 또는 자수에 의해 수사를 개시하며, 현행범체포, 풍문, 첩보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자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

6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3)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 2022, 37쪽.

별단속」을 실시 증으로, 8월 27일 현재까지 총 156건을 검거(송치)하였다. 이 중 최근 정부부처 수사의뢰 건수는 9건, 경찰청 자체 적발건수는 147건이다. 또한 경찰청은 현재 384건을 내·수사 중이며, 이 중 최근 정부부처 수사의뢰 건수는 35건, 경찰청 자체 적발건수는 349건이다.<sup>65)</sup>

[정부부처 수사의뢰 건수]

(단위: 건)

합계	감사원	권익위	지자체	고용부	행안부	교육부
44	10	7	5	4	4	2
복지부	과기부	환경부	문체부	외교부	산업부	통일부
3	2	2	2	1	1	1

주: 해당 자료의 산출 근거는 수기통계임('23. 6. 19. ~ 8. 27.)

자료: 경찰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부정수급을 범죄로 간주하여 다음 [표]와 같이 유형별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sup>66)</sup> 또한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sup>67)</sup>에 따르면, 공

(수사의뢰와 고발) 중앙관서의 장은 집행점검에 따른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의뢰 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해야 함(지침 §32조⑤)

- ◇ 수사의뢰와 고발의 구분 : 수사의뢰는 단순 수사를 요청하는 것에 그치나, 고발은 피신고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포함
  - 수사의뢰 : 부정수급 관련 처분 전 위반행위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의 적발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 고발 : 부정수급 확정 및 처분 완료 후 벌금 등 사법상 제재를 요구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64) 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support/support0101.jsp>>

65)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찰청 자체 적발건수가 정부부처 수사의뢰 건수보다 많은 현상은 현행 행정부의 부정수급관리체제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는 경찰청에서 자체 적발한 보조금 부정수급이 e나라도움에서 추출한 '의심' 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확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7)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 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 ⑤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구분]

구 분	교부결정 취소
부정 사용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위반	위반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
부정 수령 등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기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 규정

주: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 관련 미승인 등  
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부정수급 관련 기관들은 모니터링 및 신고 접수 내용을 경찰청과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원회<sup>68)</sup>는 조사기관·수사기관 처리결과의 접수 및 분석·재조사 요구에 집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의심’ 건에 대한 정보를 주무관청 외에 경찰청에도 제공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부정수급 적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68)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공공재정환수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관리 및 운영 총괄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처리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각급기관의 제도 운영실태 점검
- 조사기관·수사기관 처리결과의 접수 및 분석·재조사 요구
-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업무

## IV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 ①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편성 적정성, ②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사업의 예산안 반영 적정성, ③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효과성, ④ 부정수급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규모 및 정부 총지출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이 증가하였고, 일부 보조사업 예산안 편성내역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보조사업 정비 등 재정사업 정상화가 적정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규모는 2023년 대비 5.0% 증가(102.3조원→107.5조원)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예산안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여 정부 총지출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승(16.0%→16.4%) 하였다. 또한 202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일부 보조사업에서 기존 보조사업 예산안 편성내역의 적정성 검토, 신규 보조사업 예산안 편성 재고 등이 필요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둘째,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사업의 예산안 반영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장평가 결과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즉시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② 민간보조사업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목적 및 보조대상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보조대상 기관별로 세부사업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보조사업은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 여러 개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정부는 사업성과평가에 대해 세부사업 단위로 1사업 1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단위를 세부사업으로 유지할 경우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중복평가를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규 보조사업 심사의 적정성 분석한 결과,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신규로 연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중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받았던 사업에서 전체 연장평가 대상사업 대비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판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규 보조사업 도입시 적격성 심사를 내실있게 할 필요가 있다.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신규로 평가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보조사업 중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받았던 19개 사업의 판정결과를 살펴보면, 19개 사업 모두 폐지, 감축, 통폐합 등의 판정을 받았다.

넷째,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부정수급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관리·분석하여 체계적인 부정수급 감소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착오, 행정시차, 사정변경 등의 유형별로 부정수급 감소 목표치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정수급 관리·단속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부처 및 경찰청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각 기관들은 기망·부패 유형의 부정수급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과 공유하여 수사 및 환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VI  
2024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2) 국고보조사업 분석

---

발간일 2023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ISBN 979-11-6799-164-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6-001984-01

ISBN 979-11-6799-164-5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